

회계학개론

※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(회계기간)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. 단,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(年)이자율이며,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.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.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.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.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.

1.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.
- ②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.
- ③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,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④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,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.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.
- 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.

2. (주)세무의 20×1년도 재무제표의 상품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. 20×1년도 (주)세무의 상품매입과 관련된 현금유출액은?

기초매출채권	₩40,000	기말매출채권	₩50,000
기초상품재고액	30,000	기말상품재고액	28,000
기초매입채무	19,000	기말매입채무	20,000
기초선수금	20,000	기말선수금	15,000
기초선급금	10,000	기말선급금	5,000
매출액	400,000	매출원가	240,000
환율변동이익*	4,000		
* 환율변동이익은 매입채무에 포함된 외화외상매입금에서만 발생함			

- ① ₩222,000 ② ₩228,000 ③ ₩236,000 ④ ₩240,000 ⑤ ₩248,000

3.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.
- ②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,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③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, 그런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.
-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,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,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.
- 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,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.

4. (주)세무리스는 (주)한국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, 20×2년 10월 1일 생산설비(취득원가 ₩800,000, 내용연수 10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감가상각)를 취득과 동시에 인도하였다. 리스기간은 3년이고, 리스료는 매년 9월 30일에 수령한다. (주)세무리스가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면, 동 거래가 20×2년 (주)세무리스와 (주)한국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?(단, 리스와 관련된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고, 리스료와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.)

일자	리스료
20×3년 9월 30일	₩100,000
20×4년 9월 30일	120,000
20×5년 9월 30일	140,000

- | <u>(주)세무리스</u> | <u>(주)한국</u>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₩5,000 증가 | ₩25,000 감소 |
| ② ₩10,000 증가 | ₩30,000 감소 |
| ③ ₩25,000 증가 | ₩25,000 감소 |
| ④ ₩30,000 증가 | ₩30,000 감소 |
| ⑤ ₩30,000 증가 | ₩50,000 감소 |

5. (주)세무는 20×1년 설립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.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, 20×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. (주)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,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×4년도 재무제표에 비교정보로 공시될 20×3년 매출원가와 20×3년 기말이익잉여금은?

	20×1년	20×2년	20×3년
가중평균법적용 기말재고자산	₩10,000	₩11,000	₩12,000
선입선출법적용 기말재고자산	12,000	14,000	16,000
회계정책 변경 전 매출원가	₩50,000	₩60,000	₩70,000
회계정책 변경 전 기말이익잉여금	100,000	300,000	600,000

- | <u>매출원가</u> | <u>기말이익잉여금</u> | <u>매출원가</u> | <u>기말이익잉여금</u>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₩61,000 | ₩607,000 | ② ₩61,000 | ₩604,000 |
| ③ ₩69,000 | ₩599,000 | ④ ₩69,000 | ₩604,000 |
| ⑤ ₩71,000 | ₩599,000 | | |

6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(주)한국이 발행한 채권을 ₩927,910에 취득하였다. 동 채권의 액면금액은 ₩1,000,000, 표시이자율은 연 10%(매년 말 지급)이며,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%이었다. 20×1년 말 동 채권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₩990,000이며, (주)세무는 20×2년 3월 31일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₩1,020,000에 동 채권을 처분하였다. (주)세무의 동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채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없다.)

-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1년 말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₩990,000으로 동일하다.
-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1년 당기순이익은 ₩162,090 증가한다.
-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1년 총포괄손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.
-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2년 당기순이익은 ₩30,000 증가한다.
- 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2년 당기순이익은 ₩75,741 증가한다.

7. (주)세무리스는 20×1년 1월 1일에 (주)한국과 해지불능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.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- 리스자산 :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100,000, 정액법 감가상각
- 리스기간 : 리스기간개시일(20×1년 1월 1일)부터 5년
- 연간리스료 : 매년 12월 31일 지급
- 리스개설직접원가 : (주)세무리스와 (주)한국 모두 없음
- 내재이자율 : 연 10%, (주)한국은 (주)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
- (주)세무리스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채권으로 ₩19,016,090(리스기간개시일의 리스자산 공정가치와 동일)을 인식함
- (주)한국은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으로 ₩18,991,254를 인식함
- 특약사항 :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조건이며, (주)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 잔존가치 ₩100,000 중 일부를 보증함

(주)한국이 동 리스와 관련하여 보증한 잔존가치는? (단, 기간 5년, 할인율 연 10%일 때, 단위금액 ₩1의 현재가치 계수는 0.6209, 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 계수는 3.7908이다.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
- ① ₩18,955 ② ₩40,000 ③ ₩60,000 ④ ₩81,045 ⑤ ₩100,000

8. (주)세무는 20×3년 1월 1일 종업원 40명에게 1인당 주식선택권 40개씩 부여하였다.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향후 3년 동안 (주)세무에 근무해야 가득된다. 20×3년 1월 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₩300으로 추정되었으며, 행사가격은 단위당 ₩600이다. 각 연도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퇴직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.

연도 말	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	실제 퇴직자	추가 퇴직 예상자
20×3	₩300	2명	6명
20×4	400	4	2
20×5	500	1	-

20×6년 초에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50%가 행사되어 (주)세무가 주식(단위당 액면금액 ₩500)을 교부하였다면,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증가되는 자본은?

- ① ₩66,000 ② ₩198,000 ③ ₩264,000 ④ ₩330,000 ⑤ ₩396,000

9.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전환사채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다.
- ② 전환조건이 변경되면 발행자는 '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'와 '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'의 차이를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③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전환권 특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.
- ④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.
- ⑤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한다.

10.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동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한다. 이때,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.
- ② 부채의 현행원가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.
- ③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외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.
- ④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,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.
- 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.

11. ㈜세무의 20×6년 당기순이익은 ₩2,450,000이며,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,800주이다. 20×6년 9월 1일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. 이때 발행금액은 주당 ₩40,000이며, 유상증자 직전 종가는 주당 ₩60,000이다. ㈜세무의 20×6년 기본주당순이익은? (단,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.)

- ① ₩1,167 ② ₩1,225 ③ ₩1,250 ④ ₩1,289 ⑤ ₩1,321

12. 20×5년에 설립한 (주)세무는 (주)한국과 건설기간 3년, 계약금액 ₩1,000,000인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점인 20×7년까지는 동 공사만 진행하였다. (주)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,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.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(주)세무가 20×6년과 20×7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이익은 각각 얼마인가? (단, 취득한 건설자재는 동 건설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)

	20×5년	20×6년	20×7년
당기 건설자재 취득원가	₩90,000	₩100,000	₩50,000
기말 미사용 건설자재	10,000	40,000	40,000
당기 건설노무원가	120,000	140,000	250,000
당기 건설장비 감가상각비	10,000	12,000	18,000
추정총계약원가	700,000	720,000	-

- 20×6년 20×7년 20×6년 20×7년 20×6년 20×7년
- ① ₩74,111 ₩69,222 ② ₩74,111 ₩85,889 ③ ₩78,000 ₩82,000
- ④ ₩78,000 ₩84,000 ⑤ ₩78,000 ₩85,889

13. (주)세무는 (주)한국이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만기보유 목적으로 20×6년 10월 1일에 취득하였다.

액면금액	₩1,000,000	발행일	20×6년 7월 1일
표시이자율	연 8%	만기일	20×9년 6월 30일
발행일 유효이자율	연 10%	이자지급일	매년 6월 30일

사채의 취득금액에는 경과이자 포함되어 있으며, 사채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%이다. 동 거래와 관련하여 (주)세무가 20×6년에 인식할 이자수익 금액과 20×6년 말 인식할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합계액은? (단, 이자는 월할계산한다.)

기간	단일금액 ₩1의 현재가치		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	
	8%	10%	8%	10%
1	0.9259	0.9091	0.9259	0.9091
2	0.8573	0.8264	1.7833	1.7355
3	0.7938	0.7513	2.5771	2.4869

- ① ₩981,521 ② ₩977,765 ③ ₩990,765 ④ ₩1,020,000 ⑤ ₩1,023,756

14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₩100,000(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감가상각)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(매년 말 재평가)을 적용하기로 하였다.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.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공정가치의 하락은 자산손상과 무관하다.)

연도	20×1년 말	20×2년 말	20×3년 말
공정가치	₩100,000	₩63,000	₩39,000

- ① 20×2년도 감가상각비는 ₩25,000이다.
- ② 동 거래로 인한 20×2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₩(-)20,000이다.
- ③ 20×2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₩0이다.
- ④ 20×3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₩3,000이다.
- ⑤ 동 거래로 인한 20×3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₩(-)21,000이다.

15.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.
- ②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(자기지분상품)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중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다.
- ③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.
- ④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.
- ⑤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.

16.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.
- ②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③ 기업은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.
- ④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,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.
- 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,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한다.

17. (주)세무는 20×3년부터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고 있으며, 판매한 제품 중 5%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 (주)세무는 제품보증활동에 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한다. 해당 보증비용은 20×3년 말과 20×4년 말에 각각 ₩1,200과 ₩1,500으로 추정되었다.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20×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? (단,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 지출로 이루어진다.)

연도	판매량	보증비용 지출액
20×3년	600개	₩15,000
20×4년	800개	₩17,000(전기 판매분) ₩30,000(당기 판매분)

- ① ₩26,000 ② ₩30,000 ③ ₩34,000 ④ ₩37,500 ⑤ ₩40,500

18. 20×1년 말 (주)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20×1년 말 (주)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? (단, 사용이 제한된 것은 없다.)

(1) (주)세무의 실사 및 조회자료

- 소액현금: ₩100,000
-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: ₩200,000
- 수입인지: ₩100,000
- 양도성예금증서(만기 20×2년 5월 31일): ₩200,000
- 타인발행당좌수표: ₩100,000
- 우표: ₩100,000
- 차용증서: ₩300,000
- 은행이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 금액: ₩700,000

(2) (주)세무와 은행 간 당좌예금잔액 차이 원인

- 은행이 (주)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액: ₩50,000
- 은행이 (주)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수수료: ₩100,000
- (주)세무가 당해연도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: ₩200,000
- 마감시간 후 입금으로 인한 은행미기입예금: ₩300,000

- ① ₩1,050,000 ② ₩1,200,000 ③ ₩1,300,000 ④ ₩1,350,000 ⑤ ₩1,400,000

19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투자목적으로 건물(취득원가 ₩2,000,000, 잔존가치 ₩0, 내용연수 4년, 공정가치모형 적용)을 구입하였다. 20×2년 7월 1일부터 (주)세무는 동 건물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. (주)세무는 동 건물을 잔여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(잔존가치 ₩0)하며,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.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, 동 거래가 20×2년도 (주)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단,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.)

구 분	20×1년 말	20×2년 7월 1일	20×2년 말
공정가치	₩2,200,000	₩2,400,000	₩2,500,000

- ① ₩480,000 감소 ② ₩280,000 감소 ③ ₩200,000 증가
 ④ ₩300,000 증가 ⑤ ₩580,000 증가

20. 차입원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되,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기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.
 ②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할 때,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(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)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.
 ③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.
 ④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.
 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.

21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₩1,200,000, 표시이자율 연 5%,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(매년 말에 액면금액 ₩400,0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)를 발행하였다. 20×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? (단,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%,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
기간	단일금액 ₩1의 현재가치		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	
	5%	6%	5%	6%
1	0.9524	0.9434	0.9524	0.9434
2	0.9070	0.8900	1.8594	1.8334
3	0.8638	0.8396	2.7232	2.6730

- ① ₩678,196 ② ₩778,196 ③ ₩788,888 ④ ₩795,888 ⑤ ₩800,000

22.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한 원재료 가격이 현행대체원가 보다 하락한다면 평가손실을 인식한다.
- ②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③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,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④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⑤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,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.

23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₩1,000,000(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감가상각, 원가모형적용)에 취득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.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,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. 동 거래가 20×3년도 (주)세무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

구 분	20×1년 말	20×2년 말	20×3년 말
회수가능액	₩700,000	₩420,000	₩580,000

- ① ₩120,000 감소 ② ₩20,000 감소 ③ ₩20,000 증가
- ④ ₩120,000 증가 ⑤ ₩160,000 증가

24. (주)세무의 20×1년 기초재고자산은 ₩200,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₩1,000,000이다. (주)세무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, 20×1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₩300,00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. 추가 고려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, (주)세무의 20×1년 매출원가는? (단,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.)

○ 20×1년 6월 1일에 (주)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(원가 ₩120,000) 중 원가 ₩20,000이 판매되었고, 나머지는 기말 현재 (주)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.
○ 20×1년 12월 21일에 (주)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(송장가격: ₩60,000)이 20×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. 이 상품은 20×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.
○ 20×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(원가 ₩50,000)을 (주)대만에 판매·인도하였다.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반품기한은 20×2년 1월 10일까지이다.

- ① ₩690,000 ② ₩770,000 ③ ₩790,000 ④ ₩870,000 ⑤ ₩890,000

25. (주)세무는 신제품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. 차입원가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다. 20×1년은 연구단계이고, 20×2년은 개발단계(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함)에 속하는데, 20×2년 7월 1일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. 무형자산(개발비)은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상각(월할상각)하며, 원가모형을 적용한다. 20×2년 12월 31일 무형자산(개발비)의 장부금액은?

내역	20×1년 1월 1일 ~ 20×1년 12월 31일	20×2년 1월 1일 ~ 20×2년 6월 30일
연구원 급여	₩40,000	₩30,000
시험용 원재료 사용액	25,000	20,000
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	10,000	5,000
차입원가	5,000	5,000

- ① ₩49,500 ② ₩50,000 ③ ₩54,000 ④ ₩55,000 ⑤ ₩60,000

26. (주)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·판매하며, 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,000단위이다. (주)세무는 현재 제품A 7,5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판매가격 ₩400으로 정규시장에 모두 판매한다. 최근 (주)세무는 (주)한국으로부터 단위당 가격 ₩350에 제품A 3,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. (주)한국의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,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. 제품A의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₩80,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₩120,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₩0이며, 조업도 수준에 따른 총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.

조업도 수준	총제조간접원가
최대생산능력의 55%	₩1,755,000
최대생산능력의 65%	1,865,000
최대생산능력의 75%	1,975,000
최대생산능력의 80%	2,030,000

(주)세무가 (주)한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, 증가 또는 감소할 영업이익은? (단,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추정은 고저점법을 이용한다.)

- ① ₩30,000 감소 ② ₩45,000 감소 ③ ₩75,000 증가
④ ₩90,000 증가 ⑤ ₩120,000 증가

27. (주)세무는 제품A(공헌이익률 50%)와 제품B(공헌이익률 30%) 두 제품만을 생산·판매하는데, 두 제품 간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. (주)세무의 20×1년 매출액 총액은 ₩7,000,000, 총고정비는 ₩1,750,000으로 예측하고 있으며, 예상 영업이익은 ₩700,000으로 설정하였다. (주)세무가 20×1년의 예상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액은?

- | | <u>제품A</u> | <u>제품B</u> | | <u>제품A</u> | <u>제품B</u>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| ₩700,000 | ₩6,300,000 | ② | ₩840,000 | ₩6,160,000 |
| ③ | ₩1,750,000 | ₩5,250,000 | ④ | ₩2,800,000 | ₩4,200,000 |
| ⑤ | ₩3,150,000 | ₩3,850,000 | | | |

28. (주)세무는 20×1년에 제품A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. 제품A의 20×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며, 기초 및 기말재고품은 없다. 제품A는 노동집약적 방법 또는 자본집약적 방법으로 생산 가능하며, 생산방법에 따라 품질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없다. 각 생산방법에 의한 예상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.

	<u>노동집약적 생산방법</u>	<u>자본집약적 생산방법</u>
단위당 변동제조원가	₩300	₩250
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	₩2,100,000	₩3,100,000

(주)세무는 제품A 판매가격을 단위당 ₩600으로 책정하고, 제조원가 외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₩50과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₩1,400,000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 (주)세무가 20×1년에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택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(A)과 두 생산방법 간에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(B)은 각각 얼마인가?

- | | <u>(A)</u> | <u>(B)</u> | | <u>(A)</u> | <u>(B)</u> | | <u>(A)</u> | <u>(B)</u>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| 8,400단위 | 20,000단위 | ② | 10,000단위 | 15,000단위 | ③ | 10,000단위 | 20,000단위 |
| ④ | 14,000단위 | 15,000단위 | ⑤ | 14,000단위 | 20,000단위 | | | |

29. (주)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하는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70,000단위이며, 20×1년에 제품A를 45,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.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(제품A 1단위 생산에 4kg 투입)되며,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. 20×1년 초 실제재고와 20×1년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.

	20×1년 초	20×1년 말
원재료	4,000kg	5,000kg
재공품	1,500단위(완성도 60%)	1,800단위(완성도 30%)
제 품	1,200단위	1,400단위

재공품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, (주)세무가 20×1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(kg)는?

- ① 180,000kg ② 182,000kg ③ 183,000kg ④ 184,000kg ⑤ 185,600kg

30. (주)세무는 전부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 단일 제품A를 생산·판매하며, 재고자산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. 20×1년 제품A의 생산·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	수량	재고금액
기초제품	1,500단위	₩100,000(고정제조간접원가 ₩45,000 포함)
당기완성품	24,000단위	
당기판매	23,500단위	
기말제품	2,000단위	₩150,000(고정제조간접원가 포함)

20×1년 재공품의 기초와 기말재고는 없으며, 고정제조간접원가는 ₩840,000, 고정판매관리비는 ₩675,000이다. (주)세무의 20×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₩745,000일 경우,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재고액은?

-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<u>영업이익</u> | <u>기말제품재고액</u> | | <u>영업이익</u> | <u>기말제품재고액</u> |
| ① | ₩710,000 | ₩80,000 | ② | ₩710,000 | ₩90,000 |
| ③ | ₩720,000 | ₩80,000 | ④ | ₩720,000 | ₩90,000 |
| ⑤ | ₩730,000 | ₩90,000 | | | |

31. 원가-조업도-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답지항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.)

- ① 계단원가(준고정비)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계단 수(구간 수)만큼 존재한다.
 ②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진다.
 ③ 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.
 ④ 공헌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진다.
 ⑤ 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.

32. ㈜세무의 20×1년 5월 중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	5월 1일	5월 31일
재 공 품	₩30,000	₩25,000
제 품	20,000	10,000

5월 중 기초원가(prime cost)는 ₩325,000이고, 가공원가(conversion cost)가 직접재료원가의 40%이며, 제조간접원가는 ₩25,000이다. ㈜세무의 5월 매출원가는?

- ① ₩320,000 ② ₩345,000 ③ ₩350,000 ④ ₩360,000 ⑤ ₩365,000

33. ㈜세무는 기계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. 20×1년에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₩787,500이 발생되었고, 기계시간당 ₩25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 결과 ₩37,500만큼 과대배부되었다. 20×1년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%인 경우, ㈜세무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?

- ① ₩715,000 ② ₩725,000 ③ ₩750,000 ④ ₩800,000 ⑤ ₩825,000

34. ㈜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·판매하고 있으며, 두 제품의 단위당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.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
구 분	제품A	제품B
판매가격	₩200,000	₩240,000
직접재료원가	85,000	95,000
직접노무원가	10,000	10,000
변동제조간접원가(기계시간당 ₩5,000)	20,000	30,000
변동판매관리비	5,000	15,000
고정제조간접원가	15,000	25,000
고정판매관리비	30,000	20,000
단위당 원가 계	165,000	195,000

㈜세무가 제품A와 제품B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계시간은 연간 3,700시간이다. ㈜세무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시장의 제한은 없으나,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은 제품A 700개, 제품B 400개이다. ㈜세무가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배합은?

-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| 제품A 700개 | 제품B 100개 | ② | 제품A 700개 | 제품B 150개 | ③ | 제품A 700개 | 제품B 400개 |
| ④ | 제품A 250개 | 제품B 400개 | ⑤ | 제품A 325개 | 제품B 400개 | | | |

35. (주)세무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. 제조지시서#1은 전기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, 제조지시서#2와 #3은 당기 초에 착수되었다. 당기 중 제조지시서#1과 #2는 완성되었으나, 당기말 현재 제조지시서#3은 미완성이다. 당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근거하여 배부한다. 당기에 제조지시서#1 제품은 전량 판매되었고, 제조지시서#2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있다.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구 분	#1	#2	#3	합 계
기초금액	₩450	-	-	
[당기투입액]				
직접재료원가	₩6,000	₩2,500	₩()	₩10,000
직접노무원가	500	()	()	1,000
제조간접원가	()	1,000	()	4,000

- 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₩12,250이다. ② 당기총제조원가는 ₩15,000이다.
 ③ 기초재공품은 ₩450이다. ④ 기말재공품은 ₩2,750이다.
 ⑤ 당기매출원가는 ₩8,950이다.

36. (주)세무는 단일 제품C를 생산하며,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다. 20×2년 제품C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1,000개로 동일하고,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. 20×2년 제품C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, 수익발생과 현금유입 시점은 동일하며 원가(비용)발생과 현금유출 시점도 동일하다.

○ 단위당 판매가격	₩6,000
○ 단위당 변동제조원가	3,200
○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	1,600
○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	242,000 (기계 감가상각비 ₩72,000 포함)
○ 연간 고정판매관리비	206,800 (매장건물 감가상각비 ₩64,800 포함)
○ 법인세율	25%
○ 기계와 매장건물은 20×0년에 취득하였다.	

(주)세무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(A)과 판매량이 1,000개인 경우의 세후영업이익(B)은?

- | | (A) | (B) | | (A) | (B) |
|---|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|
| ① | 222단위 | ₩563,400 | ② | 444단위 | ₩563,400 |
| ③ | 222단위 | ₩666,000 | ④ | 444단위 | ₩666,000 |
| ⑤ | 666단위 | ₩666,000 | | | |

37. ㈜세무는 단일 제품A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, 종합원가계산방법(선입선출법 적용)을 사용한다.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,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. 제품A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㈜세무의 제품A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? (단, 생산과정 중 감손이나 공손 등 물량 손실은 없다.)

구 분	물 량(완성도)	구 분	직접 재료원가	가공원가
기초재공품	100개 (30%)	기초재공품	₩28,000	₩25,000
당기착수품	2,100개	당기발생원가	630,000	205,000
당기완성품	()개	계	₩658,000	₩230,000
기말재공품	200개 (40%)			

- ① ₩384 ② ₩390 ③ ₩404 ④ ₩410 ⑤ ₩420

38. 부문별 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가 달라져도 배부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.
 ②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만 고려하여 그 방향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한다.
 ③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상호배부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.
 ④ 단계배부법은 한 번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는 원래 배부한 보조부문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고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.
 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한다.

39. ㈜세무는 분권화된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다. A사업부는 반제품M을 최대 3,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며, 현재 단위당 판매가격 ₩600으로 2,850단위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. B사업부는 A사업부에 반제품M 300단위를 요청하였다. A사업부 반제품M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₩300(변동판매관리비는 ₩0)이며, 사내대체를 하여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. A사업부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, 사내대체 수락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.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?

- ① ₩350 ② ₩400 ③ ₩450 ④ ₩500 ⑤ ₩550

40. 결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.
 ② 분리점판매가치법(상대적 판매가치법)은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.
 ③ 균등이익률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.
 ④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.
 ⑤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을 고려한 방법이다.

민 법

41. 민법 제1조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.
- ②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 재정·경제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③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④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.
- ⑤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
42. 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가족권 - 친권
② 청구권 - 손해배상청구권
③ 형성권 - 의사표시의 취소권
④ 사원권 - 사원총회소집청구권
⑤ 항변권 - 계약해제권

43. 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, 그 추인 전에 丙이 할 수 없는 것은? (甲은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, 丙의 선의와 악의는 甲의 제한능력에 관한 것임)

- ①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확대촉구권 행사
- ② 악의인 丙의 乙에 대한 확대촉구권 행사
- ③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
- ④ 선의인 丙의 乙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
- ⑤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계약의 철회권 행사

44.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.
-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.
- ③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- ④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허락을 얻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.
-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.

45. 甲은 2014. 10. 20.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여 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. 당시 甲의 가족으로 배우자 乙, 어머니 丙, 동생 丁이 있었고, 甲은 2016. 1. 20. 실종선고를 받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2015. 4. 20. 乙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다.
- ② 乙과 丙의 생존에도 불구하고, 甲에 대한 丁의 실종선고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.
-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의하여 甲은 실종된 날인 2014. 10. 20.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.
- ④ 丙이 2016. 1. 5. 사망한 경우, 甲은 丙을 상속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.
- ⑤ 乙이 2016. 3. 10. 甲 소유의 물건을 戊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후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, 실종선고를 신뢰한 선의의 戊는 甲에게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.

46.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담보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.
- ③ 법원은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를 허가할 수는 없다.
-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매각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면, 통상의 경우 부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.

47.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.
- ③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.
-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.
- 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지만,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2.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재단법인에는 이를 둘 수 없다.
-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, 원칙적으로 소집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.
- ⑤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, 정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.

53.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.
- ③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,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
- ④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,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,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54. 甲이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여, 乙재단법인이 성립되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의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,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.
- ② 甲의 출연재산이 동산인 경우,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.
- ③ 甲의 출연행위가 민법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, 출연재산이 乙법인의 기본재산이더라도 甲은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甲의 출연재산이 부동산이고, 乙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의 사망으로 丙에게 상속등기가 된 경우라도 그 부동산은 乙법인의 소유이다.
- ⑤ 위 ④의 경우, 상속인 丙이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, 그 부동산은 丁의 소유이다.

55. 법인의 불법행위책임(민법 제35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직무대행자 및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.
 - ②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.
 - ③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.
 -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.
 - ⑤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56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몽리(蒙利)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종물이다.
 - ② 종물은 특정의 주물에 부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.
 - ③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.
 - ④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.
 -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57.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물건은 법정과실이다.
 - ②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 - ③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 - ④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.
 - 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.
58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
 - ② 입목등기가 되지 아니한 식재된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된다.
 - ③ 유체 및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.
 - ④ 1필 토지의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⑤ 특정된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서도 공시방법을 갖추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.

63.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②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.
- ③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·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,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
- ④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⑤ 부침관계를 해소하면서 그 동안 침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.

64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.
-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③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.
- ④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.
- ⑤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,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.

65. 甲은 乙과 통모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ㄴ.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- ㄷ. 乙이 선의의 丙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,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ㄹ. 위 ㄷ.의 경우, 선의의 丙이 악의의 丁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70. 조건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.
-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,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- ④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.
-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71.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-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
- ③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.
- ④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.
- 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.

72.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이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,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.
- ② 甲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위 매매계약이 甲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, 甲은 乙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甲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.
- ⑤ 丙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.

73.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일부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 적용된다.
- ②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,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.
- ③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.
-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, 그 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.
-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지만,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
74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책임을 지므로,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.
- ②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(민법 제125조)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.
-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(민법 제126조)에 있어서,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.
- ④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(민법 제126조)는 성립될 수 없다.
-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(민법 제129조)로 인정되는 경우에,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.

75.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.
- ② 甲으로부터 甲 소유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한다.
- ③ 위 ②의 경우, 乙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甲이 허락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④ 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수인의 대리인은 능동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.
- ⑤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.

76. 甲이 2016년 4월 23일 15시에 乙로부터 6개월 후 갚기로 하고 2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, 그 6개월의 기간에 계약체결 당일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. 甲이 지체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乙에게 변제해야 하는 최종 시점은? (토요일,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)

- ① 2016년 10월 22일 15시 ② 2016년 10월 22일 24시 ③ 2016년 10월 23일 15시
- ④ 2016년 10월 23일 24시 ⑤ 2016년 10월 31일 24시

77.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-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- ③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- ④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-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.

78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.
- ②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.
-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.
- ④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
79.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.
-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진행한다.
- ③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- ④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.
- ⑤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,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.

80.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채무자의 승인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.
- ② 승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
- ③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.
- ④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한 것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- ⑤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의미한다.